기획처 기획팀 3-6-5 논문집발간규정

논문집발간 규정

2009.3.1. 개정 1997.9.22. 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여자대학 논문집(이하 "논문집"이라 한다)의 발간에 있어서 논문의 투고, 심사, 기타 논문집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주관) 논문집 발간은 연구심의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서 주관한다.
- 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회의 위기는 2년으로 한다. <개정 2009.3.1.>
- ② 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심의위원장이 한다. <개정 2009.3.1.>
- 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호선한다.
- 제4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 - 1. 논문 청탁 및 편수의 결정과 배정
 - 2. 신청논문 심사위원 선정 및 의뢰
- 3. 논문 심사 결과 취합 및 게재 결정
- 4. 논문의 편집
- 5. 기타 논문집 발간에 필요한 제반 사항
- 제5조(위원회의 소집)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.
- **제6조**(위원회의 의결) 위원회는 재적위원 2/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7조(발간횟수) 논문집은 연 1회 이상 발간한다.
- 제9조(논문의 체제) 논문집에 투고하는 원고 체제에 대하여는 "논문 투고 세칙"을 정하여 그 세칙을 따르는 것으로 한다.
- 제10조(논문의 접수와 시기) 논문은 위원회에서 접수하며, 그 시기는 논문발간일 3개월 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11조(논문의 게제과정) 제출된 논문은 "전공별 심사위원 위촉 심사의뢰 심사결과 수집 및 심의" 과정을 거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12조(심사자 위촉) ① 심사위원 위촉 및 의뢰는 논문 제출자에게 비밀로 하되, 최종 심사결과 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심사자 위촉은 연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- ③ 심사위원의 위촉 기준은 전공 분야별 권위있는 외부 학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가급적 친·인맥, 학맥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.
- ④ 심사위원은 총 3인을 기준으로 한다. <개정2006.10.1.>
- ⑤ 전공자를 찾기 어려운 논문이나 내부심사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부심사를 하되 그 인원은 2인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.
- 제13조(논문심사) ① 심사결과는 "A(합격)"."B(보완게재)"."C(수정 후 재심사)"."D(불합격) 으로 평가하도록 하며 3인중 2인 이상이 B등급 이상(합격 또는 보완게재)으로 평가함 경

기획처 기획팀 3-6-5 논문집발간규정

우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(논문심사결과통보서 참조) <개정 2006.10.1.>

- ② 2인 이상이 "D (불합격)" 등급으로 판정된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.
- ③ 2인 이상이 "C (수정 후 재심사)"로 평가할 경우 위원회는 논문을 수정하도록 논문 게 재자에게 지시한 후 최초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퇴한다.
- ④ 재심은 1회에 한하며, 재심의뢰 후 최종 결과가 제13조의제1항의 원칙에 적용하면 게 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⑤ 논문 재심사 시 수정사항의 불이행 및 기타 사유로 인해 논문게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논문심사료 전액을 반납하도록 한다. 단, 기타 사유의 적합성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다.
- 제14조(논문심사료) ① 본 대학 전임교원, 겸임교원, 초빙교원의 경우는 학교에서 논문심사료를 전액 지원하며, 단 외래교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논문심사료를 부담한다. <개정 2006. 10.1 >
- ② 재심사의 경우는 전임 및 겸임(초빙포함), 외래교수 모두 본인이 부담한다.
- **제15조**(논문의 교정) 논문의 인쇄 교정은 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위원회는 필요 에 따라 교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- **제16조**(논문집 발간) 접수된 논문 편수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었을 경우 발 가음 유보할 수 있다.
- 제17조(논문 배부 및 별쇄본 지급) ① 논문집은 논문게재자에게 1부씩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며, 별쇄본은 1인당 5편씩 제작하여 배부한다. 단, 그 이상 필요로 하는 별쇄본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.
- ② 공동연구자의 경우 개인별 5편씩 별쇄본을 배부한다.
- 제18조(저작권) 수원여자대학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수원여자대학에 있다.
- 제19조(자료의 납본 및 저작물 이용동의) 본교의 대학, 연구소 전공 및 기타 기관이 간행하는 자료는 학술정보관에 납본하여야하며, 납본 저작물은 특별한 동의 절차없이 다음 각호 이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한다. 단, 저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저작물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건부 동의 및 반대사유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①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편집상 혹은 포맷상의 변경을 통한 복제 및 DB구축을 허락함
- ② 학술연구 목적의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의 배포 및 전송을 허락함
- ③ 본교와 협약을 맺은 기관에 대한 저작물 제공 및 인터넷 서비스를 허락함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침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